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29
----------	------

제출일자 : 2018. 12. 5.

제출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법령상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구성하지 않고 그 소관사항을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규정을
- 법제처의 조례 정비 권고에 따라 해당규정을 삭제하여 행정편의적 집행을 방지하고 개별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

3. 주요내용

법령에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 삭제(제3조제4항)

4. 참고사항

- 가. 현행규정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 다. 기타사항
 - (1)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10. 10. ~ 10. 25.(15일간)
- (5)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 3. (생략) 4. <u>법령에 따라 군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이하 호에서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사항</u> 5. (생략) 6. (생략)	제3조(결정사항) ----- ---.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4. (현행 제5호와 같음) 5. (현행 제6호와 같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치행정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 7. 20.)

③당연직 위원은 국장 및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2013.5.30 개정 2017.5.10. 개정2018. 2. 27.)

④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2. 군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다만, 법령에 따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4. 법령에 따라 군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이하 이 호에서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다른 위원회 등의 기능을 대행할 때 해당 법령·조례 및 규칙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전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지며,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담당으로 한다. 다만, 안전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담당과 직원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제출 및 결과처리) ①제3조에 따른 안전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번호를 부여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안건의 주관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⑤간사는 회의종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심의요구부서와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담당이 된다.

④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